신탁계약서 변경안내

1. 대상 펀드

- 한화골드법인MMF-KM3호(국공채)

□ 변경사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개정사항 반영 [안정적 자산 투자비중 (30% 이상) 및 선환매유인 관리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(2023.04.01시행)]

구분	현행	변경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〈신 설〉	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(이하 "안정적 자산 비중" 이라 한다)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현금 2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. 양도성 예금증서 4.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『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5.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) 6.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. 다만,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7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, 또는 단기사채
조항 신설		제28조의2(선환매유인 관리조치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

		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-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.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, 해당 방안이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.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(30%)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. 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. ⑥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, 평가방법 변경(시가평가),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29조(투자신탁재산 평가)	〈신 설〉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. 1. 안정적 자산 비중 감소, 장부가·시가 괴리율 확대 등 선환매유인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

		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.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·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(이하 이 조에서 “투자신탁재산평가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⑦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투자신탁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부 칙	〈신 설〉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 (2023.04.01)